

1. 파주시통일촌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☐ 제안이유

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주민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조항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편의 도모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임.

☐ 주요골자

통일촌 농산물 직판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요건중 “직판장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”를 “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때”로 개선.(안 제7조제2항)

☐ 검토보고

조례 제7조제2항에서 통일촌 농산물 직판장의 사용허가시 그 요건을 “기타 직판장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”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 편의적인 자의적 판단이 있을 수 있는 조항으로 금번 행정규제정비차원에서 개선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일로 사료됨.